

안 전 확 인 안 전 기 준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부속서 52
(Protective Helmets for Vehicle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승차용 안전모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승차용 안전모란 차량(4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자의 머리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안전모를 말하며 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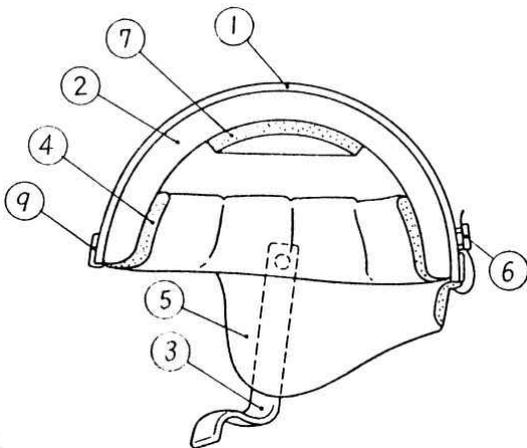
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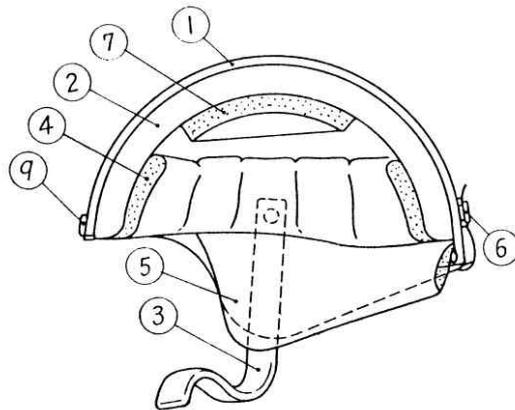
- KS Q 1003 랜덤샘플링방법
- KS E 4901 안전모
- KS G 7001 승차용 안전모
- KS G 7002 승차용 눈 보호구
- KS K ISO 105-E04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E04부: 땀에 대한 염색견뢰도

3.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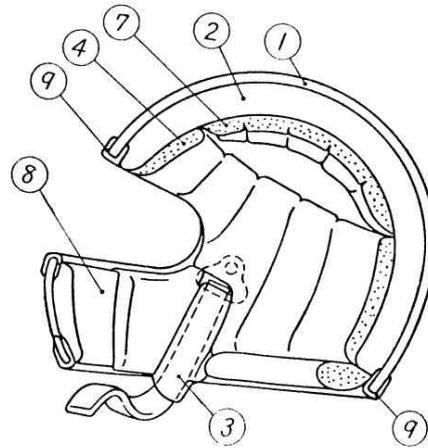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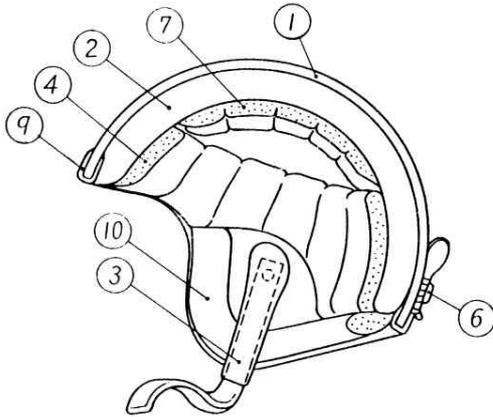
3.1 승차용 안전모의 명칭



<그림 1> 하프형 안전모



<그림 2> 세미젯트형 안전모



<그림 3> 젯트형 안전모

<그림 4> 플페이스형 안전모

<그림 1~4> 안전모의 모양 및 각부의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본체	6	안경걸이
2	충격흡수 라이너	7	머리 쿠션
3	턱걸이 끈	8	턱 가드
4	충격 밴드	9	머리 띠
5	귀 덮개	10	귀 쿠션

참고 1. 본체, 턱 끈 및 충격흡수 라이너 이외의 것을 총칭하여 착상체라 한다.

2. 그림은 보기일 뿐이며 반드시 착장시킬 부속품은 아니다.

3.2 승차용 눈보호구의 용어

3.2.1 렌즈 투명한 분리형 눈 보호구의 부품

3.2.2 눈보호면(Eye Shield) 양 눈을 덮는 투명한 평판상의 일체형 눈보호구 부품

3.2.3 얼굴 보호면 눈썹에서 턱에 걸쳐 얼굴을 덮는 투명한 눈보호구의 부품

3.2.4 투시부(Eye piece) 렌즈, 눈 보호면 및 얼굴 보호면의 총칭

3.2.5 프레임 투시부를 지지하는 테

3.2.6 승차용 안전모 KS G 7001에서 규정하는 승차용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

1종, 2종, 3종의 형이 있다.

3.2.7 시야 눈 보호구에 의해 결정되는 착용자의 시야의 한계. 단위는 각도로 표시한다.

3.2.8 프리즘 디옵터 프리즘의 굴절력 단위. 입사광에 대하여 1 m당 1 cm의 굴절을 나타내는 프리즘의 도를 1프리즘 디옵터라 한다.

4. 용어의 정의 및 종류

4.1 승차용 안전모

종 류	모 양	참 고
1종	하 프 세미젯트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 부착 자전거, 총배기량 0.125 ℓ (125 cc)이하의 2륜 자동차, 일반 4륜 자동차의 승차자
2종	세미젯트 제 트 홀페이스	도로교통법상의 2륜 자동차의 승차자
3종	젯 트 홀페이스	도로교통법상의 2륜 자동차의 승차자, 경주용 2륜 및 4륜 자동차의 승차자

4.2 승차용 눈보호구 승차용 안전모에 바람 및 분진 등에 의한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눈 보호구

종 류	형 식	기 호	주보호범위	투시부의 재료
보 안 경 형	일 체 형 분 리 형	G1 G2	눈 눈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강화유리
모 자 쉥 형	전 면 식 반 면 식	VF VH	눈과 얼굴 눈	플라스틱 플라스틱
안전모 부착형	전 면 식	HF	눈과 얼굴	플라스틱

5. 안전요건

5.1 구조

5.1.1 안전모의 구조일반

5.1.1.1 안전모는 본체의 안쪽에 충격 흡수성 라이너 및 착장체를 부착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머리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구조의 것으로서 특히 안전모의 내부에는 착용자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염려가 있는 단단한 물체가 없어야 한다. 승차용 안전모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걸이 끈을 부착해야 한다.

5.1.1.2 눈, 얼굴 등의 보호구를 안전모에 부착했을 때는 안전모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5.1.1.3 앞차양이 붙어있는 안전모는 사용 중에 풍압에 의해 늘어져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5.1.2 안전모 각부의 구조

5.1.2.1 본 체 본체는 견고한 형태로서 그 구조 및 보호 범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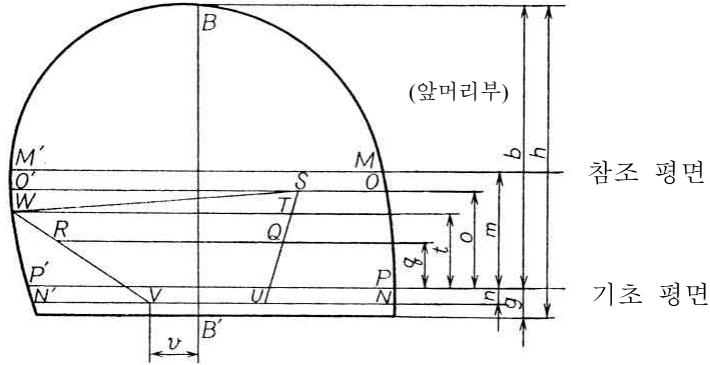
5.1.2.1.1 본체 표면은 단단하고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수지로 씌어야 한다. 다만, 가장자리를 가죽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테두리 한 것은 관계가 없다.

5.1.2.1.2 본체의 보호범위는 각 모양에 따라 표 1과 <그림 5>의 기호로서 표시된 선의 윗쪽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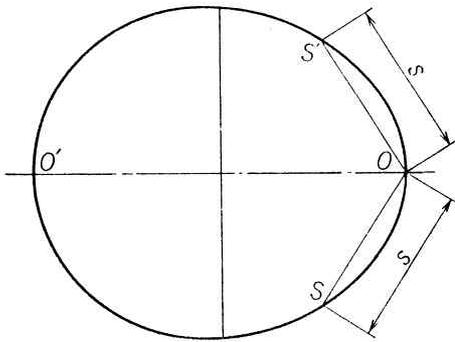
표 1. 본체의 보호 범위

모 양	보 호 범 위
하 프 형	O-S-W
세 미 칙 트 형	O-S-Q-R-W
젯 트 형	O-S-U-V-W
홀 페 이스 용	O-S-U-V-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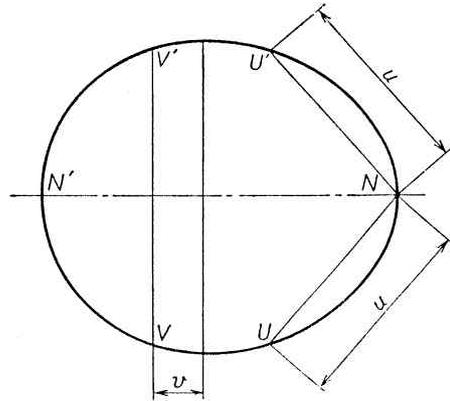
측면 그림



단면 OO'



단면 NN'



비 고 1. P, P'의 2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을 기초평면이라 하고 사람머리의 귓구멍과 눈두덩이의 아랫면을 연결하는 평면이다.

2. 기초평면 윗쪽의 시초평면에 평행하는 평면이며 M, M'의 2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을 참조 평면이라 한다.

3. O, B, O'의 3점을 포함하는 수직 평면 및 이와 평행인 평면을 화살 모양면 이라하고 특히 O, B, O'의 3점을 포함하는 화살모양 면을 중앙 화살모양이라 한다.

<그림 5>

(단위 : mm)

머리형의 종류		각 부 의 치 수										
형	머리둘레 ⁽¹⁾	q	t	o	m	n	b	g	h	v	s	u
대 형	610	26.1	41.1	53.8	64.2	3.4	149.8	16.1	165.9	25.5	91.0	108.5
표준형	570	22.6	37.6	50.3	60.0	6.9	140.0	15.0	155.0	25.5	87.0	104.0
소 형	540	19.2	34.2	46.9	55.8	10.3	130.2	13.9	144.1	25.5	84.0	101.0

주⁽¹⁾ 머리둘레는 참조평면의 바깥둘레의 길이를 표시한다.

5.1.2.1.3 본체의 보호 범위 내는 연속적으로 볼록하여야 하며 5.3.1.5 돌기부와 표면마찰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막이 등의 기타 필요한 부품(제품의 디자인을 위한 부품 포함)을 부착했을 때의 요철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이외의 부분은 요철이 없어야 한다.

5.1.2.1.4 리벳의 머리는 2.0 mm 이상 돌출해서는 안 된다. 스냅단추나 기타 단단한 돌출물은 5.0 mm 이상 돌출해서는 안된다. 또한 쉽게 이탈될 수 있는 것⁽²⁾은 예외로 한다.

주⁽²⁾ 쉽게 이탈될 수 있는 것이란 스냅과 같이 충격을 받을 때 쉽게 벗겨진다는 뜻이며 11.3 kg 의 추를 돌출물에 걸었을 때 쉽게 이탈되는 것을 말한다.

5.1.2.2 충격흡수 라이너 충격흡수 라이너는 본체의 안쪽에 밀착되어 있어서 어떠한 충격이라 할 경우에도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보호범위는 그림 5의 O-S-W선의(다만, 귀걸이 부분은 제외) 윗쪽이다. 충격흡수 라이너는 보호범위상의 두께는 균일해야하고 적당한 통기 구멍을 두어도 좋다.

5.1.2.3 턱걸이 끈 턱걸이 끈은 안전모와 충격에 의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본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귀덮개와 일체로 되어 있어도 좋지만 그 때문에 청각이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턱걸이 끈에 턱받침⁽³⁾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주⁽³⁾ 턱받침이란 착용자가 턱 끝에 대고 턱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턱 끈과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은 부품을 말한다.

5.1.3 승차용 눈 보호구의 일반구조

5.1.4 승차용 눈 보호구의 종류별 구조

5.1.4.1 보안경형 보안경형은 <그림 6>의 (a) 및 (a-1)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일체형은 테에 눈보호면을 고정한 것이다. 분리형은 테에 분리형 렌즈를 고정한 것으로 바람,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5.1.4.1.1 보안경형의 테는 눈이나 눈부위를 완전히 덮고 분진이 직접 눈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땀에 의해 투시부가 김이 서리지 않도록 적절한 통기구멍 (Ventilator)을 설치하여야 한다.

5.1.4.1.2 머리끈은 조절이 가능하고 머리에 직접 또는 안전모 위에 착용하여 쉽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5.1.4.2 모자챙형(Visor Type) 모자챙형은 <그림 7>의 (a) 및 (b)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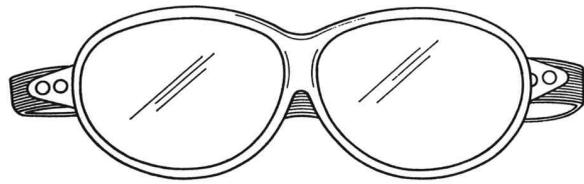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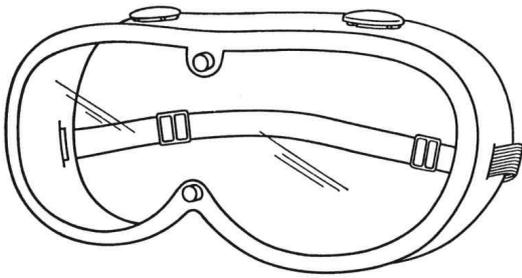
호면 또는 얼굴 보호면을 1종, 2종 또는 3종의 안전모에 스냅 등(이하 부착구라 한다)에 의해 고정하는 반면식 및 전면식의 분리형으로, 바람, 분진 등으로부터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는 구조로서 부착구는 눈 보호구의 바깥표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착구의 돌출부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재료(예 : 플라스틱)를 사용했을 때나 또는 간단히 벗겨지는 구조⁽⁴⁾인 경우에는 이 돌출부의 높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주⁽⁴⁾ 간단히 벗겨지는 구조란 충격을 받았을 때 간단히 벗겨지는 구조란 뜻으로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면 간단히 벗겨낼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은 아니다.

5.1.4.3 안전모 부착형 안전모 부착형은 그림 8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얼굴 보호면을 전면형 안전모에 고정 부착하여 바람, 분진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을 보호하는 구조로서 부착구(돛트류)는 눈 보호구의 바깥표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착구의 돌출 부분이 충격에 의해 간단히 파쇄하는 재료(예 : 플라스틱)를 사용하거나 간단히 벗겨지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 돌출부 높이의 제한은 하지 않는다.

a) 보안경형(일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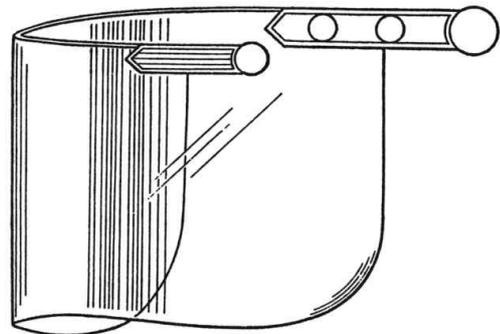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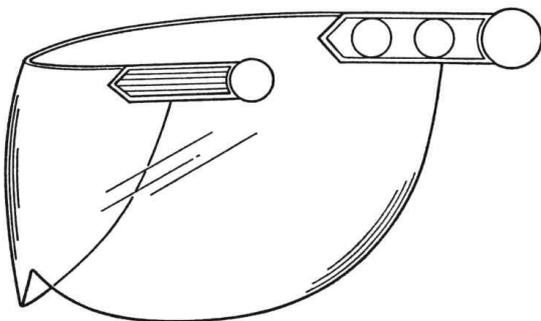
b) 보안경형(분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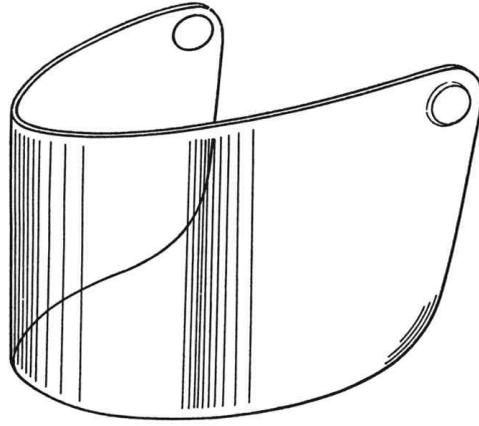
<그림 6>

a) 모자챙형(반면식)

b) 모자챙형(전면식)



<그림 7>



<그림 8> 안전모 부착형

5.2 재 료

5.2.1 승차용 안전모

5.2.1.1 본 체 본체는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성,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2.1.2 충격흡수 라이너 충격흡수 라이너의 재료는 경질의 발포-스티로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땀 및 두발유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취화, 팽윤, 연화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5.2.1.3 턱걸이 끈 턱걸이 끈은 피부에 접촉했을 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땀 및 두발유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취화, 팽윤, 연화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5.2.1.4 착장체 착장체는 피부와 접촉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땀 및 두발유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취화, 팽윤, 연화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5.2.1.5 금속 부착물 금속제 부착물은 내식성 또는 방청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5.2.2 승차용 눈보호구

5.2.2.1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부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독에 견디는 재료이어야 한다.

5.2.2.2 금속부품은 내식성(녹슬지 않는)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5.2.2.3 플라스틱 재료는 쉽게 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2.2.4 머리끈은 탄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5.3 성 능

5.3.1 승차용 안전모

5.3.1.1 충격흡수성 모든 종류의 안전모는 2 943 ㎥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하며 1 472 ㎥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시간이 4 ms 이하이어야 한다.

5.3.1.2 내관통성 안전모는 내관통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 접촉이 없을 것.

5.3.1.3 턱걸이 끈의 강도 턱걸이 끈은 턱걸이 끈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착된 지점에서 떨어지거나 손상이 없이 신장량이 25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5.3.1.4 시야 좌·우 시야는 시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좌우의 시야가 1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하의 시야는 각각 7°, 45° 이상이어야 한다.

5.3.1.5 돌기부와 표면마찰 안전모의 돌기부는 시험을 하였을 때 떨어져나가거나 미끄러져 넘어가야 되고 표면마찰은 시험하였을 때 규정된 연마재 위를 넘어가야 한다.

5.3.2 승차용 눈 보호구

5.3.2.1 **평행도** 시야범위⁽⁵⁾는 0.17 프리즘 디옵터 이하이어야 한다.

주⁽⁵⁾시야범위 : 투시부가 각각 분리된 안경형인 경우는 착용시 눈 보호구의 정면 수평선에서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66 mm 인 눈 보호구의 수직 중심선에 대칭으로 최소 지름 52 mm인 두 개의 원형, 투시부가 분리 되지 않는 경우는 강도시험의 시편에 따른다. 단, 규정된 시야 범위보다 더 작은 투시부를 가진 눈 보호구는 그 시야범위는 투시부 전체임

5.3.2.2 **굴절력** 시야범위⁽⁵⁾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5.3.2.2.1 어느 경선 사이에서도 굴절력이 0 ± 0.12 디옵터 범위이어야 한다.

5.3.2.2.2 어느 2경선 사이에서도 굴절력의 차가 0.12 디옵터 이하이어야 한다.

5.3.2.3 **투명도** 시야범위⁽⁵⁾의 투명도는 투명도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무색 눈 보호구는 시감 투과율이 85 % 이상이어야 하고 채색은 2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채색 눈 보호구는 착용자가 색상을 식별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3.2.4 **내열성(투시부에 한함)** 투시부는 내열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5.3.2.5 **내한성(투시부에 한함)** 투시부는 내한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5.3.2.6 **강도** 투시부는 강도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5.3.2.7 **보안경형에 있어서는 머리끈**

5.3.2.7.1 **인장강도** 490 N 이상이어야 한다.

5.3.2.7.2 **신장률** 150 % 이상이어야 한다.

5.3.2.7.3 **내수성** 인장강도의 변화율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5.3.2.8 **금속 부품의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6. 시험방법

6.1 구조

6.1.1 **안전모** 육안 및 촉감으로 조사하거나 KS G 7001 완제품의 구조시험에 따르며 돌출물 및 면적은 자 등으로 측정하고 무게는 저울로 측정한다.

6.1.2 **눈 보호구** 육안 및 촉감으로 조사하며 돌출물은 자동으로 측정한다.

6.2 성능 및 재료

6.2.1 충격흡수성

6.2.1.1 승차용 안전모는 KS G 7001 충격흡수성 시험에 따른다.

6.2.2 내관통성

6.2.2.1 승차용 안전모는 KS G 7001 내관통성 시험에 따른다.

6.2.3 **턱걸이 끈의 강도** KS G 7001 턱걸이끈의 강도시험에 따른다.

6.2.4 **시야시험** KS G 7001의 시야시험에 따른다.

6.2.5 **평행도** 오토콜리메이터(auto-colimator) 또는 렌즈미터 등을 사용하여 평행도를 측정한다.

6.2.6 **굴절력** 오토콜리메이터(auto-colimator) 또는 렌즈미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6.2.7 **투명도** 분광 감도 분포가 표준비 시감도 곡선에 거의 일치하는 광선수광기를 사용하여 A표준 광원에 대한 시감 투과율 측정을 하여 A표준 광원에 대한 사감투과율을 측정한다.

6.2.8 **내열성** $(60 \pm 2) ^\circ\text{C}$ 의 온수에 10분간 담근 후 바로 $(4 \pm 2) ^\circ\text{C}$ 의 물속에 넣어 10분간 경과 후 꺼내어 상온에서 건조한 다음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6.2.9 **내한성** $(-20 \pm 2) ^\circ\text{C}$ 의 저온조 속에 4시간 저장한 후 꺼내어 바로 6.3.12의 강도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6.2.10 **강도** KS G 7002 강도시험에 따른다.

6.2.11 보안경형에 있어서 머리끈 KS G 7002 머리끈의 시험에 따른다.

6.2.12 금속부품의 내식성 금속 부품을 끓은 10 % 식염수에 15분간 담근 후에 꺼내어 바로 상온의 10 % 식염수에 15분간 넣었다가 꺼내어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24시간 상온에 방치한다.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금속부품을 행구어 건조시킨 후 육안으로 부식 흔적의 유무를 조사한다.

6.2.13 땀시험 충격흡수 라이너, 턱걸이 끈, 착장체등은 KS K ISO 105-E04 4.3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제한 상온의 인공 땀액에 24시간이상 침지한 후에 육안 및 촉감으로 취화, 팽윤, 연화 등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다.

6.2.14 두발유시험 충격흡수 라이너, 턱걸이 끈, 착장체의 표면에 보건복지부 약전에 규정하는 백색 와셀린을 표면에 도포한 후 대기 중에 24시간 방치 후에 육안 및 촉감으로 취화, 팽윤, 연화 등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다.

6.2.15 돌기부와 표면마찰 시험

6.2.15.1 시험장치

6.2.15.1.1 운반대(Carriage)

a) 돌기부 시험을 위하여 운반대에 높이 6 mm, 폭 25 mm, 모서리의 반경 1 mm, 표면경화처리를 0.5 mm 정도 얇은 철재로 만들어진 바를 중간에 설치한다. 운반대와 그 부착 바는 $5^{(-0.2)}_{+0.0}$ kg의 중량을 가진다.

b) 마찰시험을 위한 운반대는 안전하게 고정된 $300.0^{(-0.0)}_{+3.0}$ mm 길이의 80등급 알루미늄 산화물 연마재를 사용한다. 운반대는 낙하추 방향으로 연마재가 포함하지 않는 길이가 (80 ± 1) mm의 부드러운 철재부위를 포함하고 그 철재부위는 연마재 두께보다 (0.5 ± 0.1) mm 높게 위치한다.

6.2.15.1.2 수평유도장치(Horizontal guide)

운반대를 지지하고 유도하는 수평유도장치는 운반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볼베어링과 두 개의 원형바로 구성한다.

6.2.15.1.3 와이어로프 또는 끈에 연결된 롤러

롤러는 직경이 적어도 60 mm이고 수평에서 수직으로 와이어 로프 또는 줄을 유도한다. 와이어로프 또는 줄의 수평 끝은 캐리지에 고정되어있고 수직 끝은 낙하추에 고정한다.

6.2.15.1.4 낙하 추(Drop weight)

낙하 추는 $15^{(-0.0)}_{+5.0}$ kg의 질량을 가진다. 돌출물시험 및 마찰시험을 위한 자유 낙하 높이는 $500.0^{(-0.0)}_{+5.0}$ mm으로 한다.

6.2.15.1.5 머리모형 지지대

(Headform support)

머리모형을 지지하는 장치는 안전모 보호 범위 내의 어느 지점이라도 운반대 표면에 위치 할 수 있어야 한다.

6.2.15.1.6 레버와 연결고리(Lever and hinge)

단단한 레버는 머리모형 지지대와 연결고리가 달린 시험장치를 연결한다. 운반대 위쪽 표면과 연결고리 중심의 높이차는 150 mm를 넘지 않는다.

6.2.15.1.7 하중

하중부여 장치는 운반대 면에 수직으로 안전모에 $400.0^{(-0.0)}_{+10.0}$ N의 하중을 가한다. 이 하중은 각 시험 전에 측정한다.

6.2.15.2 시험부위 선정

안전모의 보호범위 내의 모든 지점이 포함된다. 돌출물시험은 안전모 바깥표면으로부터 돌출물이 2

mm이상 돌출되면 측정한다. 마찰시험은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키는 외부표면 부위를 측정한다.

6.2.15.3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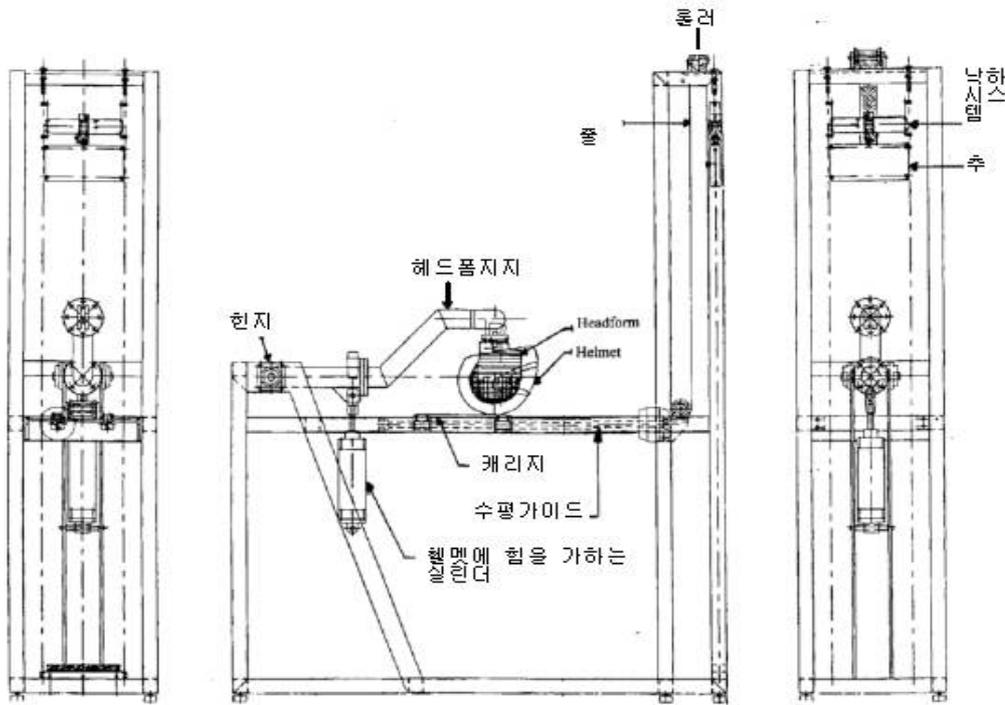
6.2.15.3.1 안전모에 악세사리(눈보호구 등)가 부착되어있는 것은 부착된 그대로 시험한다.

6.2.15.3.2 돌기부의 시험

머리모형 지지대를 조절하여 운반대 위에 돌기부의 위치를 맞춘다. 전단면이 돌기부로부터 50 mm 떨어지게 위치시킨 후 낙하추를 아래로 낙하시켜 운반대와 돌기부를 마찰시킨다.

6.2.15.3.3 마찰시험

연마재를 운반대 위에 고정시킨다. 시험할 안전모의 외표면을 연마재가 없는 평평한 표면의 운반대 중앙에 위치시킨다. 400 N의 힘을 안전모에 가하고 15 kg의 낙하추를 500 mm 낙하시킨다. 연마재는 시험할 때 마다 매번 교체한다.



<그림 9> 돌기부와 표면마찰 시험장치

7. 검사방법

7.1 모델의 구분 승차용안전모의 모델은 종류별, 재질별, 모양별, 크기별(대형, 표준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단, 눈 보호구는 투시부의 색상별로도 구분한다.

7.2 시료채취방법 필요할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7.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AC)	불합격판정갯수(Re)
안전확인	1	0	1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

8. 표 시

8.1 일반사항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8.1.1 모델명(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

8.1.2 제조연월

8.1.3 제조자명

8.1.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1.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1.6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8.1.7 크기의 호칭(대형은 머리모형의 참조평면 바깥둘레가 61 cm 이상이고, 중형은 57 cm 이상 61 cm 미만, 소형은 57 cm 미만이다)

8.1.8 투시부의 재질(승차용 눈 보호구에 한함)

8.1.9 취급상 주의사항

① 승차용 안전모

주 의

1. 머리에 잘 맞는 안전모를 사용하십시오.
2. 턱걸이 끈은 반드시 바르게 매어 주십시오.
3.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겉모양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용하지 마시오

② 승차용 눈보호구

사용설명서

1. 선택방법 :
2. 사용상의 주의사항 :
3. 보수 및 점검사항 :
4. 보관요령 :

- 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3호 (2007. 1. 24)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95호 (2007. 7. 20)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1018호 (2008. 12. 31)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8호 (2009. 12. 30)
 개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553호 (2011. 12. 1)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5호 (2015. 12. 30)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32호 (2017. 2. 8)